

● 제28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4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송아량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52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(외 10명)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가. 급성 심장정지 환자 증가에 따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응급의료장비(자동심장충격기, 이하 “AED” 라 한다) 활용이 늘어나면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.
- 나. 현행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은 공공기관,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 AE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의무설치기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. 또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ED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『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』는 AED의 설치에 대해서만 지

원을 규정하고 있음.

- 라. 따라서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장비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AED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AED의 적시 사용과 안전한 서울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『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』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ED(자동심장충격기)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AED의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, AED를 갖춘 시설에 장비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AED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개정안은 AED의 설치시 설치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AED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도 비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임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<u>응급의료장비</u> 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응급의료장비</u> <u>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</u> <u>하는 표지 등의 시설을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법에는 안내표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는 부재하나¹⁾ 법의 재정지원근거 규정(제16조)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.
- 그러나 심폐소생을 위한 법의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(제47조의2)²⁾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법의 응급장비의 관리 규정(시행규칙 제38조의3)³⁾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게 하고 있음.

-
- 1) 제16조(재정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- 2)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 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-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3) 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 2. 응급장비 사용교육
 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·비치
-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- 또한 법의 지도감독 규정(제50조)은⁴⁾ AED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과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.
- 법의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(시행규칙 제38조의2)은⁵⁾ AED 등에 대한 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관리대상업무에는 AED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.

3 종합의견

- AED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사무가 자치사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AED의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만들고 지원하는 입법취지가 상위법을 훼손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.
- 법과 조례, 그리고 법 시행규칙 등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AED의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의 개

4) 제50조(지도·감독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·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

5) 제38조의2(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)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"응급장비"라 한다)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·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·폐기·이전 신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지만, 구체적인 집행가능성과 예산 수반성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